

한화갤러리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고 하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.
- ② 위원회는 ①항의 사외이사 후보자의 수락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 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연도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수가 본인의 거절 등의 사유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하여 추천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만료,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며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

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, 모사전송(FAX), 이메일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.
- ② 위원장은 위원 전부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의결권은 출석위원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부의 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1) 사외이사후보자의 결정
 - (2) 기타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 (보 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간 사)

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